[경기문화재단 공모 제2026-21호]

2026년 장애(예술)인 전문예술 활동지원 공모 안내

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장애 예술인(단체)의 잠재된 예술성을 발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2026년 장애(예술)인 전문예술활동지원 사업 공모를 추진합니다. 본 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된 「경기도 장애예술인 전문예술교육사업」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장애 예술인(단체)에게 보다 폭넓은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. 이번 공모가 경기도 내 장애 예술인(단체) 여러분의 창작 활동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예술적 성장과 활동 확장을 도모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문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사업 공통 안내

▪ 예술인 권리보장 및 법령 준수사항

- 선정된 예술인 및 단체(대표자)는 예술인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선정된 예술인 및 단체(대표자)는 안전한 문화예술 환경을 위하여 안전보건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사업 수행 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, 타인의 저작물 사용 시 원저작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적법하게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
-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일 경우,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피보험자격 신고 및 보험료 납부 등 고용보험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.

▪ 사업 선정자 준수사항

- 선정된 예술인(단체)는 사업에 적합하게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며 연내에 지원금 집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
- 홍보물과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 지원사업명과 후원 내용(경기도, 경기문화재단)이 표기되어야 합니다.
- 재단이 사업 관리를 위해 현장 모니터링을 요청할 경우 현장 모니터링 제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-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에 재투자하고 수익금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선정된 예술인 및 단체(대표자)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. 교육 불참 시 차기년도 사업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선정된 예술인(단체)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**회계검증 시행**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.
  ※ 회계검증수수료 단가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***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5년 회계검사 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**

구분	예산규모	수수료(원)
1	7백만원 미만	187,000
2	7백만원 이상 1천5백만원 미만	226,000
3	1천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	302,000
4	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	360,000
5	4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	390,000

※ 자부담금을 포함한 총액으로 예산규모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■ 공모안내

○ 2026년 주요 변경사항

변경 전	
구분	내용
지원금	(단체) 30백만원 (평균) (개인) 3백만원 (정액)
연속지원	별도 규정 없음.

➡

변경 후	
구분	내용
지원금	(단체) 25백만원 (평균) (개인) 10백만원 (평균)
연속지원	***2026년부터 3년 연속 지원 예술인(단체) 신청제한**

※ 본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될 경우, 다음연도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.
(2026년 선정 실적부터 적용되며,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연속 선정 시 2029년 신청 제한)

○ 신청자격

▶ 공통신청자격

◈ 지원신청자격

- 예술인 및 예술단체
- 문화예술진흥법(제7조)에 의한 예술법인 및 단체
- 문화예술시설 운영자
-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예술인 및 예술단체

▶ 지원신청 제외사항

◈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
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
  (단, 접수 마감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를 보유 했을 경우 신청 가능)
- 국·공립(도·시·구·군립) 문화예술기관·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
-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
- 학교, 종교기관, 친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
-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·단체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
  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- 마감일까지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개인·단체
- 성희롱·성폭력 등 모든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해당 구성원이 포함된 단체
  (단,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·성폭력 등 모든 성범죄가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, 혹은 그러한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재단 내부 협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)
- 지원금 반납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은 개인·단체
- 선정 후 경기도 주소지 확인 시 공고일(2026.3.27.) 이후 전입한 개인·단체
- 그 외 신청할 수 없는 대상은 사업별 신청자격 기준 참고

◈ **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**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
  (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예술경영지원센터, 지역문화재단 등)
- 정치적, 종교적 목적의 사업
-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
- 시설의 건립과 매입, 재건축 사업
-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
-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
-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, 표절하는 등 저작권 침해 및 기타 위반 사항이 있는 사업
-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

◈ **공통 유의사항**

- 심의에서 미선정된 사업은 별도로 안내하지 않습니다.
- 심의 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.
- 심의위원 명단과 심의총평 외에 개별적인 미선정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.
- 지원자격 미달 또는 필수제출자료 미비 시 행정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.
- 표절 논란 등 저작권 관련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, 선정 이후라도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, 해당자는 일정 기간 공모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(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예술경영지원센터, 지역문화재단 등)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일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, 선정 이후에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제출자료 내 허위 사실이 확인될 시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**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, 중복 신청으로 간주합니다.**
- **단체 대표자가 단체와 개인으로 이중 신청할 경우, 중복 신청으로 간주합니다.**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내 개인 계정으로 단체 사업을 신청한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지원신청서 기재 정보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의 사업 신청정보가 상이할 경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 신청정보 기준으로 심의합니다.(단체 대표자, 소재지 등)
- 접수 마감일까지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개인·단체는 지원신청 불가합니다.
- 선정 후 주소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(주민등록초본, 사업자등록증 등)를 제출할 수 없거나, 공고일(2026.3.27.) 이후 전입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○ 추진일정

구분	일시	내용
공고	2026.3.27.(금) 10:00	○ 경기문화재단 누리집 (ggcf.kr)
접수기간	3.27.(금) ~ 4.10.(금) 17:00	○ **온라인 신청 접수** - 접수처 :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(ncas.or.kr)
심의추진	4.13.(월) ~ 5.6.(수)	○ 행정심의, 서류심의, 인터뷰심의 진행
결과발표	5.7.(목) 예정	○ 경기문화재단 누리집 (ggcf.kr)
사업기간	2026.5. ~ 11.	○ 선정 후 사업수행 절차 안내 예정

※상기 일정은 재단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○ 추진절차

사업신청	>	심의 및 결과발표	>	사전 컨설팅 및 교부신청	>	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수행	>	성과 공유 워크숍	>	정산 및 결과보고

○ 심의절차

1차 행정심의		2차 서류심의		3차 인터뷰심의		발표
신청자격 및 제출자료 확인	>	심의기준에 따른 심의	>	심의기준에 따른 심의	>	최종 선정자 공고
신청자격 및 제출자료 미비 시 심의대상 제외		전문가(심의위원) 심의 및 3차 심의 대상 개별 통보		**상황에 따라 서면 혹은 화상심의로 전환** 가능		최종 심의결과로 지원금 결정액 조정 가능

※ 단, 예술인(개인) 유형은 서류심의(2차)를 최종단계로 하며 **필요시 비대면 혹은 서면질의를 통해 사실 확인 절차 등을 추가로 진행**할 수 있습니다.

○ 지원신청 방법

재단 누리집에서 지원신청서 다운로드	>	지원신청서 작성	>	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지원신청서 제출	>	접수 완료

▶ **재단 누리집 주소: ggcf.kr** > [공모·신청] > [공모지원] > [사업공고] > [공모] 페이지에서 조회

▶ **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주소: ncas.or.kr** > [지원신청가능사업] 조회

▶ **안내사항**

- 우편, 이메일 등 서면 접수는 불가합니다.
- 재단 누리집에 업로드 되어있는 지원신청서(지정서식) 외 추가 제출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.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에 업로드 하는 **파일 용량이 50MB를 초과할 경우 파일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파일이 등록되지 않아 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,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업로드 완료 여부를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 (파일 용량이 50MB를 초과하더라도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업로드된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.)
- 접수 **마감일은 접속자 폭주로 인해 서버가 지연되거나 다운될 수 있으니 마감 기한 전 여유있게 제출하여** 주시기 바랍니다. 접수 기간 내 최종 지원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건은 접수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 이용 방법은 공고문 첨부파일의 매뉴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문의처

구분	문의처		운영시간
채팅 문의	[카카오톡 오픈채팅방] ※카카오톡에 가입하셔야 이용 가능합니다. ※아래 링크 또는 우측 QR 접속 https://open.kakao.com/o/sbT2Comi		○ 경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- 3.27.(금) ~ 4.10.(금) - (평일) 10:00 ~ 16:00
유선 문의	모든 장르	031-231-0870	
접수 시스템	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 고객센터	1577-8751	(평일) 9:00 ~ 18:00

※ 점심시간(12:00 ~ 13:00) 및 공휴일(주말 등 포함)은 유선 연결이 불가합니다.

※ 공모 접수 기간에는 문의 전화/메시지 폭주로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※ 공고문의 '자주 묻는 질문'을 먼저 확인하시면 문의 내용에 대한 사항을 더욱 신속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○ 현장안내

▶ IT 활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지원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현장안내를 운영합니다.

4월 2일(목)	4월 7일(화)	4월 9일(목)
· 운영시간 : 10:00 ~ 17:00 (점심시간 12:00 ~ 13:00 제외) · 운영장소 : 경기문화재단 1층 경기 예술인의 집 (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)		

※ 지정된 일자/시간 외에는 현장안내를 운영하지 않습니다.

※ 방문 전 사업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지원신청서를 미리 작성한 후 저장한 파일(usb, 이메일 등)을 가지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공정한 절차를 위해 사진 파일 첨부, 한글 작업 등 **지원신청서 작성은 도와드리지 않습니다.**

※ 오시는 길

- 수원시청역 9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/ 또는 버스 92(92-1) 탑승 후 경기문화재단. 매탄주공4.5단지 하차
- 수원역 4번 출구 수원역.노보텔수원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9,2-1,9-1,92,92-1 탑승 후 경기문화재단.매탄주공4.5단지 하차

※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드립니다.

■ 사업세부안내

○ 장애예술인(개인)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 colspan="2">내 용</th></tr>
<tr><td>지원내용</td><td colspan="2">○ 잠재된 예술성을 발굴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작·발표 등 예술활동 지원</td></tr>
<tr><td>지원분야</td><td colspan="2">○ 기초예술분야(문학, 시각, 공연, 전통 등)의 모든 예술활동(전시·공연·행사 등) 지원</td></tr>
<tr><td>지원규모</td><td colspan="2">○ 건당 (평균) 1,000만원 / 15건 내외 선정 예정
※ 선정규모 및 지원 금액은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(차등 지원)될 수 있음
※ 문학의 경우 지원금 전액 창작지원 상금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임</td></tr>
<tr><td>신청자격</td><td colspan="2">○ 경기도에 거주(주소)하면서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예술인
① 예술분야에서 창작, 실연,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의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장애예술인
→ 근거: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, 예술인 복지법 제2조
②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았거나,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이에 준하는 예술활동이 인정되는 장애예술인</td></tr>
<tr><td>참고사항</td><td colspan="2">○ 신청자격 관련 제출 서류
① 주민등록초본
② 장애인등록증(혹은 복지카드) 사본
※ 예술인 신뢰 존중 및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주민등록초본은 선정결과 발표 이후에 제출합니다.
※ 제출하는 주민등록초본상 현재 주소지의 경기도 전입일은 공고일(2026.3.27.) 이전이어야 합니다.</td></tr>
<tr><td>필수
제출자료</td><td>공통
○ 지원신청 제출 서류
1. 지원신청서
2. 개인소개서
3. 주요 예술활동 실적(최대 3건)
4. 사업계획서(창작발표)
5.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6. 원고 및 출판계약서('문학'에 한해 제출)
* 출판계약서는 선정 후 1개월 내 제출</td><td>원고분량(문학 지원에 한함)
① 시·시조 : 10편
② 소설(단편) : 2편
③ 소설(중편 또는 장편) : 1편
④ 평론, 수필 : 5편
⑤ 아동문학(동시, 동화), 희곡 등 : 발간할 책 원고 분량 전체
※ 소설 200자 원고지 기준(매수 이하)
: 100매(단편), 500매(중편), 1,000매 내외 (장편) 분류 권장
※ 제출원고는 미발표 신작에 한함</td></tr>
<tr><td>심의계획</td><td colspan="2">○ 2단계 심의 : 1차 행정심의 → 2차 서류심의
○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장르별 전문가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진행
* 필요시 비대면 혹은 서면질의를 통해 사실확인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음
* 문학의 경우 제출원고가 정해진 원고 분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(미달 또는 초과) 평가 시 불이익이 반영될 수 있음</td></tr>
<tr><td>비고</td><td colspan="2">○ 활동 지역은 경기도에 한함
○ 선정 작가는 출판계약서 및 제출한 원고를 바탕으로 유통과 판매를 전제로 연내(2026) 작품집을 발간해야 합니다.
이때 선정작(신작 원고)은 반드시 수록하여야 하며, 그 외 단행본 구성은 작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</td></tr>
</table>

○ 장애예술단체

구 분	내 용
지원내용	○ 예술적 성장과 육성을 위하여 **기획·창작·발표 등 예술활동** 지원
지원분야	○ 기초예술분야(문학, 시각, 공연, 전통 등)의 모든 예술활동(전시·공연·행사 등) 지원
지원규모	**○ 건당 (평균) 2,500만원 / 12건 내외 선정 예정** ※ 선정규모 및 지원 금액은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(차등 지원)될 수 있음
신청자격	**○ 경기도에 소재하면서 장애예술인이 소속된 예술단체로서,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예술단체** ① 단체 소속 구성원 중 장애인 구성원 수가 30% 이상인 단체 ② 예술활동(프로젝트) 참여자(관객 및 교육 대상자 등 제외) 중 장애인 구성원 수가 30%인 단체 ※ 지원신청 시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예술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※ 제출하신 명단 내 주요 참여 장애예술인은 선정 후 임의 변경이 불가하며,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재단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. ※ 단체 대표자 또는 프로젝트 구성원 중 중추적인 역할로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참고사항	**○ 신청자격 관련 제출 서류**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② 장애인등록증(혹은 복지카드) 사본 ※ 예술인 신뢰 존중 및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**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은 선정결과 발표 이후에 제출**합니다. ※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상 **경기도 소재지의 개업 연월은 공고일(2026.3.27.) 이전이어야 하며, 발급 년월은 결과 발표일(2026.5.7.)이후**이어야 합니다.
필수 제출자료	**공통** **○ 지원신청 제출 서류** 1. 지원신청서 2. 단체소개서 3. 주요 예술활동 실적(최대 3건) 4. 사업계획서 5.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심의계획	**○ 3단계 심의** : 1차 행정심의 → 2차 서류심의 → 3차 인터뷰심의 ○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장르별 전문가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진행
비고	○ 낭독, 쇼케이스, 공연, 오픈스튜디오 등 일반적인 공연·전시 형태에 국한되지 않은 형태의 결과물 발표 가능 ○ 활동 지역은 경기도에 한함

■ 지원주체별 심의기준

○ 공통

▶ 2025년도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(단체)의 사업 수행 모니터링 결과를 금년도 심의에 환류하여,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최대 10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.
(2026년에 선정된 예술인 및 단체의 모니터링 결과는 2027년 사업 지원신청 시 심의 가점으로 반영될 수 있음)

○ 장애예술인(개인)

▶ 문학

항목	심의기준(내용)	배점(100)
적정성 및 타당성	• 사업 목적에 부합한 계획 및 결과물(원고)이다. • 원고의 주제가 적절하고 목표가 명확하다.	30
구체성 및 실현가능성	• 제출 원고에 예술성, 참신성, 독창성이 있다. • 활동계획과 추진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.	30
사업 추진역량	• 제출한 원고의 우수성 및 완성도가 높다. • 효과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자질을 보유하고 있다. - 예술성, 독창성, 완성도 등	30
기대효과	• 해당 사업을 통해 예술적 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기대된다.	10

▶ 시각예술·공연예술·다원예술 등

항목	심의기준(내용)	배점(100)
적정성 및 타당성	• 사업 목적에 부합한 프로그램이다. • 사업 취지 및 장애예술에 대한 이해와 정보, 필요와 욕구에 기반하는 프로그램이다.	30
구체성 및 실현가능성	• 예술 작품의 예술성(작품수준), 참신성, 독창성이 있다. • 창작활동계획과 추진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.	30
사업 추진역량	• 사업 내용 구성이 현실적이고 타당하며,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. •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사업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하다.	30
기대효과	• 해당 사업을 통해 예술적 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기대된다. • 해당 사업의 추진이 문화예술 진흥·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.	10

○ 장애예술단체

항목	심의기준(내용)	배점(100)
적정성 및 타당성	• 사업 목적에 부합한 프로그램이다. • 사업 취지 및 장애예술에 대한 이해와 정보, 필요와 욕구에 기반하는 프로그램이다.	30
구체성 및 실현가능성	• 참여자 모집, 공간 활용,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와 추진 방향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, 예산 집행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다. • 장애예술인의 참여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다.	30
사업 추진역량	• 충실한 이행을 통해 사업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. •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. (관련 분야 지식 및 경험, 노하우 등)	30
기대효과	•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활성화와 향유 확대에 기여한다.	10

자주 묻는 질문 FAQ

■ 신청자격 및 거주지 관련

1	**Q. 장애예술인(개인)의 경우,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?** A. 아닙니다. 장애예술인(개인)은 공고일(2026.3.27.)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.
2	**Q. 장애예술단체의 경우, 대표자가 경기도에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?** A. 아닙니다.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상관없이,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상의 소재지가 경기도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3	**Q. 비장애 예술인(단체)으로만 구성된 단체도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?** A. 본 공고의 지원 대상은 장애예술인이 소속된 예술단체로 명시되어있습니다. 구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. ① 단체 구성원 기준: 전체 구성원 중 장애인 비율이 30%이상 ② 프로젝트 참여자 기준: 해당 예술활동(프로젝트)에 실제 참여하는 인원 중 장애인 비율이 30%이상
4	**Q. 장애인 등록증이 꼭 있어야 하나요?** A. 네,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을 필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 구체적인 제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 - 장애예술인(개인) : 본인의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- 장애예술단체 : 대표자 본인 또는 단체에서 지정한 주요 장애인(중추역할) 예술인의 증빙자료
5	**Q. 예술활동증명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한가요?** A. 아닙니다,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하지 않으셨더라도, 그에 준하는 예술활동을 꾸준히 이어오신 장애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 제출해주신 예술 활동 이력이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추후 전문가 심의를 통해 검토될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.

■ 지원내용 및 규모

1	**Q. 개인과 단체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?** A. 개인은 평균 1,000만원(15건 내외), 단체는 평균 2,500만원(12건 내외)규모로 지원될 예정입니다.
2	**Q. 개인의 경우 문학분야는 지원금 지급 방식이 다른가요?** A. 네, 문학의 경우 지원금 전액이 창작지원 상금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.
3	**Q. 작년에 지원받았는데 올해 또 신청할 수 있나요?** A. 가능합니다. 다만, 2026년부터는 3년 연속 선정될 경우 그 다음 연도(2029년)에는 신청이 제한되는 **'연속지원 제한 규정'이 신설**되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접수 및 심의 절차

1	**Q.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나요?** A. 모든 접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서면 접수는 불가합니다.
2	**Q. 공고문에 없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도 되나요?** A. 아니요,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자료는 심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3	**Q. 제출할 때 파일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?** A. 개인은 장애예술(개인)_이름으로, 단체는 장애예술(단체)_단체명으로 저장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

1	**Q. 예산 항목을 가득 채워서 편성해야 하나요?** A. 예산은 사업 계획에 근거하여 산출 근거가 명확하고 적정해야 합니다. 단순히 금액을 맞추기보다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예산을 바탕으로 편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다만, 예산 계획 수립 시에는 신청하시는 총 지원금액에 맞춰 오차없이 작성해주셔야 합니다. 선정 후 지원금액에 따라 세부 예산계획을 다시 수립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초기 단계부터 사업 목적에 꼭 필요한 항목들로 예산을 계획해주시기 바랍니다.
2	**Q. 회의비는 최대 얼마까지 책정할 수 있나요?** A. 회의비는 총 사업비의 5%이하로 편성하여 집행 가능합니다.
3	**Q. 대표자 사례비(또는 본인 창작비)를 예산에 편성할 수 있나요?** A. 네, 가능합니다. 본인 또는 대표자의 사례비(기획비)는 전체 지원금의 최대 20% 이내에서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. 단, 한도 금액은 최대 200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.
4	**Q. 제출할 때 파일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?** A. 개인의 경우 장애예술(개인)_이름,으로, 단체의 경우 장애예술(단체)_단체명으로 저장하여 제출바랍니다.
5	**Q. 단체 대표자의 가족이나 관계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?** A. 아니요, 불가합니다. 사업 신청 단체의 대표자, 임직원 및 그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는 보조금(강사료, 원고료, 인건비 등 포함) 을 집행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의무사항 및 유의사항

1	**Q. 선정 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나요?** A. 선정자는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이수, 안전보건서약서 제출,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 참여, 회계검증 시행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.
2	**Q. 타 기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?** A. 동일한 사업(프로젝트, 원고 등)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타 문화재단 등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한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.
3	**Q. 사업 진행 중에 세부 내용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?** A. 부득이하게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, 사전에 반드시 담당자와 협의 후 '사업 변경 신청서'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승인되지 않은 사업내용의 임의 변경 및 추진 시 보조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4	**Q. 선정 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표(보고)가 필수인가요?** A. 네, 선정된 모든 프로젝트(작품)은 발표(또는 발간)되어야 합니다. 또한, 발표하는 장소는 경기도 내로 한정합니다.